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. 11. 30 선고 2022가단10659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

피 고 A 주식회사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1. 30.

주 문

1. 피고와 B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5. 9. 및 2022. 5. 18. 체결한 각 매매계약을 46,08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46,0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다만,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전경훈

목 록

1. 경남 함안군
공장용지 1960㎡
2. 경남 함안군
[도로명 주소] 경남 함안군
위 지상
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
2층 공장
1층 1150㎡
2층 90㎡
3. 경남 함안군
도로 23㎡
4. 경남 함안군
도로 1㎡

--- 이 상 ---

청 구 원 인

1. 원고의 보증과 소외 금융기관의 대출

가. 원고의 보증

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, 소외 주식회사C 대표이사 B(이하 위 소외 회사라 한다)의 보증의뢰에 따라 위 소외 회사가 소외 D은행 및 소외 E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<표1>의 순번 ①번 내지 ③번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위 D은행 및 위 E은행에게 각 발급하였으며, 또한 F회사를 경영하던 소외 B(이하 위 B라 한다)의 보증의뢰에 따라 위 B가 소외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<표1>의 순번 ④번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위 D은행에게 발급하였습니다.

나. 연대보증

한편 위 B는 <표1>의 순번 ①번 내지 ③번의 신용보증건에 대하여, 위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약정상 원고에 대한 상환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원고에게 보증을 하였으며, 이에 따라 위 소외 회사 및 F회사 대표 위 B는 아래 <표2>의 순번과 같이 위 D은행 및 위 E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습니다.

<표1. 보증내역>

(단위 : 원)

순 번	보증번호	보증금액	보증일	보증기한	대출과목	보증 상대처	기업체명
①	G	595,000,000	2013. 5. 6.	2022. 10. 21.	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	D은행 철원지점	주식회사 C
②	H	190,000,000	2014. 1. 7.	2022. 10. 26.	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	E은행 장원공단금융센터	주식회사 C
③	I	170,000,000	2022. 3. 30.	2023. 3. 29.	기업일반 자금대출	D은행 철원지점	주식회사 C
④	J	297,000,000	2020. 10. 13.	2022. 10. 12.	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	D은행 철원지점	F회사

<표2. 대출내역>

(단위 : 원)

순번	보증번호	보증금액	대출기관(취급점)	대출일자	대출금액
①	G	595,000,000	주식회사 C	2013. 5. 6.	700,000,000
②	H	190,000,000	주식회사 C	2014. 1. 7.	190,000,000
③	I	170,000,000	주식회사 C	2022. 3. 30.	200,000,000
④	J	297,000,000	F회사	2020. 11. 11.	330,000,000

2. 원고의 사전구상 및 대위변제

가. 그런데 2022. 5. 23.경 위 소외 회사의 부실(신용상태악화등) 및 2022. 5. 23.경 F회사를 경영하던 위 B의 부실(신용상태악화등)로 인해 신용보증사고 [신용보증약정서 제 6조 1항에 의하면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됨] 가 각 발생하여 원고는 위 D은행 및 위 E은행의 각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<표3> 과 같이 위 D은행 및 위 E은행에게 각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소외 회사 및 위 B로부터 그 대위변제 합계액을 상환받을 채권이 있

습니다.

<표3. 대위변제내역>

(단위 : 원)

순번	보증번호	대위변제일자	원 금	이 자	구상금합계	기업체명
①	G	2022. 8. 5.	560,000,000	7,435,877	567,435,877	주식회사 C
②	H	2022. 8. 4.	190,000,000	2,370,991	192,370,991	주식회사 C
③	I	2022. 8. 5.	170,000,000	2,053,972	172,053,972	주식회사 C
④	J	-	-	-	-	F회사 (사전구상)
합계			920,000,000	11,860,840	931,860,840	

나.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원고와 위 소외 회사 사이에, 원고와 위 B 사
에 각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
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
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, 그 율은 아래 <표4> 와 같습니다.

<표4. 지연손해금율 내역>

기 간	이율(연)	비 고
대위변제일부터 - 현재까지	8%	금리자율화에 따른 원고 소정율

3. 대위변제금잔액 및 확정지연손해금

원고와 위 소의 회사 사이에, 원고와 위 B 사이에 각 작성된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, 원고는 위 소의 회사로부터 <표5> 와 같이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에 충당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 및 위 회수금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아래 <표5> 와 같습니다.

<표5. 대위변제금 잔액 및 지연손해금 내역>

(단위 : 원)

순번	보증번호	발생금액	회수금액	잔 액	확정지연손해 금
①	G	567,435,877	731,420	566,704,457	160
②	H	192,370,991	30,321	192,340,670	192
③	I	172,053,972	-	172,053,972	-
④	J	-	-	-	-
합계		931,860,840	761,741	931,099,099	352

4. 구상금 채권 합계

그러므로 위 소의 회사 및 위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931,099,099 원(순번 ①.항 금 566,704,457원 + 순번 ②.항 금 192,340,670원 + 순번 ③.항 금 172,053,072원)과 위 확정지연손해금 352원(순번 ①.항 금 160원 + 순번 ②.항 금

192원)등 합계금 931,099,451원(위 대위변제금 931,099,099원 + 위 확정지연손해금 352원)과 위 대위변제금 192,340,670원에 대하여 2022. 8. 4.부터, 위 대위변제금 738,758,429원에 대하여는 2022. 8. 5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[위 <표1>의 순번 ④번 보증건에 대하여는 대위변제후 차후 청구원인을 변경하겠습니다.]

5. 위 B와 피고간의 사해행위

(위 B와 피고간 체결한 매매계약 체결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)

가.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소외 회사 및 F회사를 경영하던 위 B의 각 신용보증 사고로 인하여 그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조사를 실시하였더니, 위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인겸 F회사 대표 위 B는 신용보증사고 직전 자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강제집행할 것을 예상하고,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. 5. 18. 매매예약 및 2022. 5. 9. 매매계약을 각 체결한 후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22. 5. 18. 접수 제 803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, 2022. 6. 20. 접수 제 977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, 각 경료해 주었습니다.

나. 한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담보가치 있는 각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자력이 없는 위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각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어야 할 책

임제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인 바,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 외에는 담보가치가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위 B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별지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고, 그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준 것은 원고등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그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 역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정을 인식하고,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위 B와 피고간의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,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마땅히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다

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,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, 사해행위 후 변제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,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

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,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,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,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.(대법원 1999. 9. 7. 선고 98다41490호, 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0다 66416 판결등 참조)

라.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각 체결 당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[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13. 9. 6. 접수 제 19118호 채권최고액 1,440,000,000원, 채무자 B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D]에 대한 피담보 채무가 존재하였으나, 피고가 사해행위 이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,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1,187,880,000원에서 실패출금 1,141,800,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금 46,080,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의 범위, 가액배상의 범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.(원고소송대리인은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무 잔액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한 후 가액배상금액을 확정하겠습니다.)

마. 따라서 위 B와 피고 사이에 각 체결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금 46,08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금 46,0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

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.

6. 결론

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.

